

2024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(의사)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

2024년 하반기 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(의사)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4년 11월 15일

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 분야 및 선발 예정 인원

연번	임용 분야	임용 직급	임용 인원	근무 기간	근무 예정 부서	담당 예정 직무
1	의사 (정신건강의학과 의사)	임기제지방 의무사무관	4명	2년	어린이병원 (진료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신건강의학과 운영 및 진료에 관한 사항 -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, 상담, 교육,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- 성인)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진료 - 소아)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외래환자 진료 및 어린이발달센터 운영 - 임상 연구, 의료진 교육 및 대외 협력사업 등

<참고> 보수 지급 예상액(의료업무수당·직급보조비 등 포함, 성과연봉 별도): 218백만원~

▶수당: [1,312천원/월(의료업무수당)]+[540천원/월(직급보조비 등)]=1,852천원/월

▶성과연봉: S등급 7,775천원/ A등급 5,345천원/ B등급 3,402천원(채용된 다음 연도부터 지급)

▶임상연구비(해당자만): 6백만원(1년)

※ 기타 자격, 경력 등에 따라 연봉 추가 협의 가능

2	의사 (영상의학과 의사)	임기제지방 의무사무관	1명	2년	어린이병원 (진료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상의학과 총괄 - 영상의학과 운영 및 의료영상 관독에 관한 사항 - 영상의학과 초음파 및 골밀도 검사, 건강검진 등에 관한 사항 - 임상연구 및 공공의료사업 등
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	----	----------------	---

<참고> 보수 지급 예상액(의료업무수당·직급보조비 등 포함, 성과연봉 별도): 185백만원~

▶수당: [1,312천원/월(의료업무수당)]+[540천원/월(직급보조비 등)]=1,852천원/월

▶성과연봉: S등급 7,775천원/ A등급 5,345천원/ B등급 3,402천원(채용된 다음 연도부터 지급)

▶임상연구비(해당자만): 6백만원(1년)

※ 기타 자격, 경력 등에 따라 연봉 추가 협의 가능

연번	임용 분야	임용 직급	임용 인원	근무 기간	근무 예정 부서	담당 예정 직무
3	의사 (구급지도의사)	임기제지방 의무사무관	1명	2년	소방재난본부 (서울종합방재센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급대원의 현장 응급처치 적정성 향상을 위한 의료지도 실시 - 119구급서비스 전산통신시스템상의 응급의료정보 관리체계 구축 - 상황요원에 대한 간접의료지도 교육 및 하트세이버 대상자 평가 -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사업(심정지 질 관리, 외상환자 전문처치 등) 추진 <p>※ 3교대 근무(근무형태: 당번-비번-비번)</p>

<참고> 보수 지급 예상액(의료업무수당·직급보조비 등 포함, 성과연봉 별도): 120백만원~

▶수당: [1,312천원/월(의료업무수당)]+[540천원/월(직급보조비 등)]=1,852천원/월

▶성과연봉: S등급 7,775천원/ A등급 5,345천원/ B등급 3,402천원(채용된 다음 연도부터 지급)

※ 기타 자격, 경력 등에 따라 연봉 추가 협의 가능

※ 근무 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 시 근무자의 근무 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

2. 법령 근거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
- 「서울특별시 인사규칙」

3. 응시 자격요건

- 공통 응시 자격요건 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최종 예정일)
 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 - 지역·연령·성별: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※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“비위면직자 등”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-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.
 1.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: 퇴직일
 2.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)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3.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4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된 날 또는 사면, 형 집행을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
 5.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: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
 6.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: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의해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○ 선발 직무 분야 응시 자격요건

<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7조제2항제2호 경력경쟁임용에 따른 “자격증” 응시 요건 적용 >

연번	구 분	임용 직급	근무 예정 부서	응시 자격요건
1	의사 (정신건강의학과 의사)	임기제지방 의무사무관	어린이병원 (진료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◇ 우대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·공립 병원 근무 경력자 또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세부 수련 전문의
2	의사 (영상의학과 의사)	임기제지방 의무사무관	어린이병원 (진료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른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◇ 우대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·공립 병원 근무 경력자 또는 소아청소년 영상의학과 세부 수련 전문의
3	의사 (구급지도의사)	임기제지방 의무사무관	소방재난본부 (서울종합 방재센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◇ 우대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응급의학과, 내과, 일반외과, 흉부외과,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응급의료 경력자

※ 상위 임용 등급에 규정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 등급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.

※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.

4. 보수 수준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라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함.

[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(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4조 관련)]

(단위: 천원)

구 분	상한액	하한액
5급(상당)		65,346

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
※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: 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,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,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. (←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)

5. 시험 일정 및 시험 방법

○ 응시 원서 접수

- 접수 기간: **2024. 11. 21.(목)~11. 25.(월) ※ 3일간**
- 접수 방법: 우편(등기) 또는 방문 접수 ※ 우편 접수 권장 / 응시번호 문자 개별 통보
 - **접수 마감일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하며,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않음.**
 - 방문 접수 시간: 09:00~18:00 [점심시간(12:00~13:00) 제외]
- 접수 처: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
 - 우편 접수: (우편번호 06756)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,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경력채용팀
 - 방문 접수: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8,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창의관 2층
- ※ 응시 원서 양식(응시 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- ※ **접수 마감일까지의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 원서는 무효 처리**
- ※ 대리 접수, 우편 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.

○ 시험 일정

구 분	일 정	장 소
시험 공고	2024. 11. 15.(금)	서울시 누리집 등
응시 원서 접수	2024. 11. 21.(목)~11. 25.(월)	우편 및 방문 접수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4. 12. 13.(금) (예정)	서울시 누리집 등
면접시험	2024. 12. 23.(월)~12. 27.(금)	서울시 인재개발원
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024. 12. 31.(화) (예정)	서울시 누리집 등
최종 합격자 발표	※ 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확정	

- 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 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.
(단,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.)

○ 시험 방법

가. 1차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 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**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한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**
- **단, 선발 예정 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**
- ※ 서류전형 기준은 직무 연관성, 경력 및 업무실적, 직무 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·시행
- ※ **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하며 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**

나. 2차 면접시험

-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- 직무과제 보고서 작성, 집단토론 또는 개인별 발표(응시자 2명 이하인 경우), 개별 심층 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 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 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 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.

다. 면접 합격자 발표: 서울시 누리집 등에 공고
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 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 합격자로 임용 자격이 부여됨.
- ※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, 합격 취소, 임용 결격사유,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.

6. 가산 특전

○ 취업 지원 대상자 가산 특전 (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)

구 분	가 산 비 율
취업 지원 대상자	만점의 10% 또는 5%
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의한 취업 지원 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가산
-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은 시험 점수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(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의 경우 제외)
-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 단, 응시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.
- 선발 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.
- 취업 지원 대상자 등록 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’ 발급받아 제출(정부42 통한 인터넷 발급 또는 보훈(지)청 방문, FAX 등으로 발급 가능)

7. 제출 서류

가. 공통 사항(필수 사항)

○ 응시 원서(첨부 1) 1부

- 응시 원서에는 응시 수수료(5급 10,000원)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부착(매출전표) 또는 첨부(납부확인서)
 - ※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는 종이 증지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납부확인서 또는 매출전표를 응시 원서에 부착하여야 함.(판매장소: 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02-2133-7908)
 - ※ 일부 자치구 재무과에서도 서울특별시 수입증지(매출전표)를 취급하나, 방문 전 발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, 반드시 서울특별시 수입증지(매출전표)를 구매하여야 함.
 - ☞ 자치구 수입증지(매출전표)가 첨부된 응시 원서는 접수 불가
 - ※ 온라인 구입은 ETAX홈(etax.seoul.go.kr)에서 절차(신고 납부 → 서울시 채용 수수료)에 따라 하면 됨.
 - ※ 원서 접수처(인재개발원)에서는 증지를 판매하지 않음.
 - ※ 응시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, 2인 이상 미성년 다자녀 양육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증명서, 한부모가족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.

◆ 수입증지 구입 안내 ◆

1. 직접 방문 발급

- 직접 방문: 서울시 열린민원실(신청사 1층) 또는 가까운 구청 재무과(방문 전 사전 연락 후 방문)
 - ▶ 서울시청 열린민원실: 현금 또는 신용카드(체크카드 가능)
 - * 현금일 경우에는 응시 원서에 인증 날인(방문시 필히 지참)
 - * 카드일 경우에는 결제 후 매출전표 발행(카드사용/가맹점용) 및 부착
 - ▶ 구청 재무과: 카드만 사용 가능

2.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템(ETAX) 발급: 시민이 직접 이택스 내 「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」 메뉴에서 구매 가능

- ▶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금액(1만원 선택) 입력 후 결제 구매(회원, 비회원 모두 가능)

◆ 메뉴위치: [ETAX(etax.seoul.go.kr) > 신고납부 > 서울시 임기제 채용수수료]

- ▶ 납부확인서는 1회만 발급 가능, 복제방지 및 원본 확인용 발급번호 표기됨

◆ 메뉴위치: [ETAX(etax.seoul.go.kr) 홈 > 납부(영수증)확인 > 신고납부확인
납세번호 클릭 > 하단 “납부확인서” (영수증×) 인쇄]

- 이력서(첨부 2) 1부
 - 이력서상의 경력은 **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**하며,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- 자기소개서(첨부 3) 1부
- 직무수행계획서(첨부 4) 1부
- 개인정보 제공·이용 동의서(첨부 5) 1부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첨부 6) 1부
-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-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, 학위증서(석사 이상) 또는 학위증명서 1부
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 - ※ 사본 제출 가능 (단, 최종 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)
- 채용 예정 직무 분야의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
 - 근무 기간, 직위, 직급 및 **담당 업무(응시 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 범위 해당 업무를 반드시 기재)를 정확히 기재**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
 - ※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상에 해당 분야 응시 자격요건 경력인정 범위의 **직무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[첨부 8] ‘경력 사실 확인 증명서’** 추가 제출
 - **시간제 근무 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 단위 근무 시간을 명시한 증빙자료** 제출
- 민간 부문 업무 활동 세부명세서,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
 - 서울특별시의 5급(상당) 이상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」에 따라 임용 전 민간 부문 활동에 대한 ‘업무활동 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 시 직무회피 서약서’ 를 제출하여야 하며, 임용 후 2년간 직무 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 받게 됨. ※ 임용 후보자 등록 시 제출

- ▶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인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 필) 반드시 첨부
- ▶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▶ 폐업기관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(국세청 홈택스 발급 가능), ②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 서류* ①, ②모두 제출
- * **고용보험(피보험자격 내역서), 국민연금(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), 건강보험(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), 산재보험(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) 중 1개 선택**

※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 증명서 발급 방법(국세청 홈택스)

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

- 국세청 홈택스(<https://www.hometax.go.kr/>) 접속 →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 관련 신청/신고 →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→ **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 내역**

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

- 국세청 홈택스(<https://www.hometax.go.kr/>) 접속 → 국세증명·사업자등록·세금 관련 신청/신고 → 즉시발급 증명 → 소득금액증명 → **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**
-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
- 관련 문의: 국세청 (☎126)

나. 개별 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- 동일 계통 학과 증명서(첨부 7) 1부
- 경력 사실 확인 증명서(첨부 8) 1부
- 응시 자격 및 우대 요건 관련 증빙자료(자격증 등)
-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

8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 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,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.
-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입증자료는 사본 제출을 허용하고,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반환합니다.
-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 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,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-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 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응시 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면접시험 점수를 응시자에게 공개합니다.
(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발송)
-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누리집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▶ 채용절차 관련 문의: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경력채용팀(02-3488-2342)
 - ▶ 직무내용 관련 문의

연번	임용 분야	담당 부서	연 락 처
1	의사(정신건강의학과 의사)	어린이병원 진료부	02-570-8049
2	의사(영상의학과 의사)		
3	의사(구급지도의사)	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	02-726-2051

- 붙임 1. 직무기술서 각 1부.
2. 제출서류 서식 1부(따로 붙임).

직무기술서

채용 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의사(정신건강의학과 의사)	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	4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서울특별시	어린이병원 진료부
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신건강의학과 운영 및 진료에 관한 사항 ○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, 상담, 교육,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인) 정신건강의학과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진료 - 소아)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입원·외래환자 진료 및 어린이발달센터 운영 ○ 임상 연구, 의료진 교육 및 대외 협력사업 등
-------------	---
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 ○ (직급별 역량)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, 창의력, 기술적 전문지식
-------------	---
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자 진단에 필요한 의학 전문 지식 ○ 시립의료기관의 수행 업무 및 역할에 대한 지식 ○ 의료법 및 보건의료 관련 법규 및 관련 지침에 관한 지식
-------------	---

응시 자 격 요 건	자격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
우대요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·공립 병원 근무 경력자 또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세부 수련 전문의

직무기술서

채용 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의사(영상의학과 의사)	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서울특별시	어린이병원 진료부
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상의학과 총괄 ○ 영상의학과 운영 및 의료영상 판독에 관한 사항 ○ 영상의학과 초음파 및 골밀도 검사, 건강검진 등에 관한 사항 ○ 임상연구 및 공공의료사업 등
-------------	---
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 ○ (직급별 역량)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, 창의력, 기술적 전문지식
-------------	---
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자 진단에 필요한 의학 전문 지식 ○ 시립의료기관의 수행 업무 및 역할에 대한 지식 ○ 의료법 및 보건의료 관련 법규 및 관련 지침에 관한 지식
-------------	---

응시 자 격 요 건	자격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른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
우대요건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·공립 병원 근무 경력자 또는 소아청소년 영상의학과 세부 수련 전문의

직무기술서

채용 분야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
의사(구급지도의사)	임기제지방의무사무관	1명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서울특별시	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

주요업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구급대원의 현장 응급처치 적정성 향상을 위한 의료지도 실시 ○ 119구급서비스 전산통신시스템상의 응급의료정보 관리체계 구축 ○ 상황요원에 대한 간접의료지도 교육 및 하트세이버 대상자 평가 ○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사업(심정지 질 관리, 외상환자 전문처치 등) 추진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※ 3교대 근무(근무형태: 당번-비번-비번)</p>
-------------	---

필요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 ○ (직급별 역량)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상황판단 능력, 문제해결 능력
-------------	--

필요지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심폐소생술 지도 및 현장처치 세부 지도에 대한 지식 ○ 응급의료처치 제반 지식 ○ 응급의료체계 운용 지식 ○ 응급처치 교육 전반에 대한 지식
-------------	---

응시 자 격 요 건	자격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의료법」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
	우대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응급의학과, 내과, 일반외과, 흉부외과,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응급의료 경력자